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춘남 의원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7. 11.

발의자 : 김춘남(1인)

찬성자 : 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민성
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
소진혁·양진오·이지연·장미경
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15인)

1. 제안이유

최근 대구시와 정부에서 안동댐뿐만 아니라 우리시 해평취수장에 대한 물공급을 다시 검토하는 등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지난 3월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노후 산단을 미래 50년을 열어갈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이와 함께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공단과 도시를 아우르는 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중에 있음. 이처럼 향후 구미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대응과 그에 따른 방향설정 및 대안제시를 위하여 「구미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2. 내 용

가. 구성인원: 9명(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7명)

나. 존속기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다. 활동내용

- 우리시 해평취수원 활용 방안
- 해평취수원 사용에 따른 우리시 대응과 정부·대구시와의 협력 방안
- 문화선도산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 문화선도산단 추진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방안
- 도시 및 공단 등 재생 사업의 활성화 방안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나.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